

2018년 운정3동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2. 03. ~ 12. 06. (4일간)
- 감사범위 : 2016. 11. ~ 감사일 현재 업무전반
-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등 7명
- 중점감사내용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실태
 - 농지 인허가 및 보조금 집행 실태
 - 이륜자동차 및 옥외광고물 관련 처리 적정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II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건
 - 행정상 조치 : 총 10건 (시정 4, 주의 6) ※현지조치 2건
 - 재정상 조치 : 총 2건 (회수 xxx천원, 추징 xxx천원)
 - 모 범 사 례 : 총 3건 (특수시책 1건)

Ⅲ

감사 총평

- 이번 종합감사는 운정3동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음

- 운정3동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2011. 7. 25.자로 교하읍이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 4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자연마을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어우러져 현재는 파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 현재에도 운정역과 야당역 주변 역세권에 상업시설이 계속 들어서면서 운정, 야당역, 제2자유로 등 편리한 교통시설, 호수공원 및 소리천의 쾌적한 환경, 운정1파출소 및 119안전센터 운영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한 환경을 두루 갖춘 곳임. 최근 개장한 운정다목적체육관과 한울도서관으로 인해 문화공간도 확대되어 내년 개청하는 운정 출장민원실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예정임

- 금번 감사 결과 관련 법령 숙지 미흡 등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대체휴무 사용 소홀,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건설공사 원가계산 소홀,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소홀, 이륜자동차 지방세 부과 업무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부적정,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부적정,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10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어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7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540천원 회수, 252천원 추가 징수, 현지조치 2건 등 제도개선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지원과 감사결과 사례를 전파하고자 함

IV 마감회의 개최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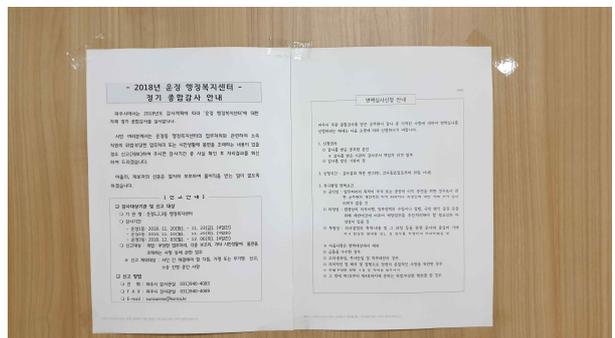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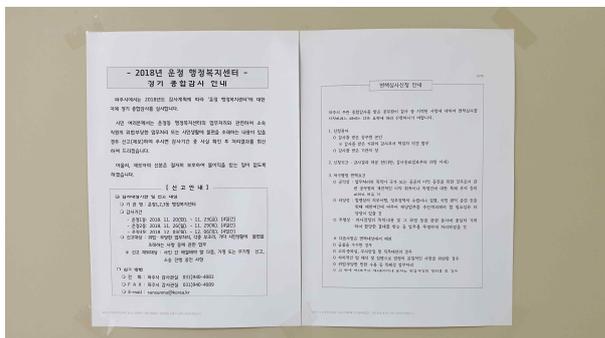
□ 마감회의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일 시: 2018. 12. 06(금) 17:00 ~ 17:50
- 장 소: 운정3동 동장실
- 참 석
 - 운정 1동: 4명(동장 및 담당팀장 3명)
 - 감사관실: 3명(청렴감사팀장 및 담당 2인)
- 회의내용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전달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지적사항 관련 의견 나눔
 - 향후 감사 일정 안내

[운정3동 마감회의 사진]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V

처분요구 목록

일련 번호	소관별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 치	
계		총 10건 (시정 4건, 주의 6건) ※현지조치 2건		xxx,xxx		
1	운정3동 (총무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액 관리 소홀	시정			
2	운정3동 (총무팀)	대체휴무 사용 철저	주의			
3	운정3동 (총무팀)	신용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주의			
4	운정3동 (총무팀)	건설공사 원가계산 소홀	주의			
5	운정3동 (총무팀)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주의			
6	운정3동 (총무팀)	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소홀	주의			
7	운정3동 (시민복지팀)	이륜자동차 지방세 등 관리 소홀	시정	xxx,xxx		추징
8	운정3동 (시민복지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부적정	시정			
9	운정3동 (시민복지팀)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부적정	시정	xxx,xxx		회수
10	운정3동 (시민복지팀)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현지조치						
1	운정3동 (총무팀)	통장 회의참석수당 지급 철저	현지 주의			
2	운정3동 (총무팀)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및 관용차량 운행일지 미결재	현지 시정			

순번	소 관	내 용	비 고
1	총무팀	<p>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시정</p> <p>-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과주시 재무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납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지방재정시스템 상 출납부의 수납일이 서로 상이하고 감사일 현재('18.11.21.) 기준 출납부 잔액과 관리계좌의 잔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관리 소홀</p>	
2	총무팀	<p>대체휴무 사용 철저 - 주의</p> <p>- 「과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근무 후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선택해서 휴무를 할 수 있으나</p> <p>- 2018년 대체근무 사용 현황을 보면 82번 중 월, 화 사용한 30번을 제외하고 52번을 사용하는 등 대체 휴무 사용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p>	
3	총무팀	<p>신용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 주의</p> <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의하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p> <p>- 100만원이상 신용카드사용부 미작성→9건(금액13,99,800원)</p> <p>-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부 미작성→1건(684,500원)</p>	
4	총무팀	<p>건설공사 원가계산 소홀 - 주의</p> <p>-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야당3동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등 3개 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음.</p> <p>* (고용보험) 2건 (산재보험) 3건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1건</p>	

5	총무팀	<p>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 「과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경우 시공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감독조서 미작성 4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야당3동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진출입계단 보강공사”의 경우 도급업체가 공사 착공 시 제출한 현장대리인이 보유한 기술자격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 	
6	총무팀	<p>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소홀 -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라 공사 종류를 감안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 <p>* 총 46회 중 35회 실시 / 실시율 76% [‘18년도는 하자검사완료]</p>	
7	시민복지팀	<p>이륜자동차 지방세 부과 소홀 -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3조, 제28조, 제30조에 따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번호변경 신고 처리시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부과하지 않았고(2건),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재사용신고시 취득세 5%를 부과 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1건) - 총xxxx,x00원 [재정상 - 추정] 	
8	시민복지팀	<p>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부적정 -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유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함 -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이나 별도 인정사항 및 확인 절차 없이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 사망에 의하여 ‘주차가능 표지’ 회수 대상이나 현재까지 미회수한 사실이 있음 - 부적정 발급에 의한 ‘주차가능 표지’ 회수 등 적의조치 요함 <p>※ 총 6건에 대해 회수 조치 요함</p>	

9	시민복지팀	<p>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부적정 -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2018년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부채 시 지급 정지, 중지일이 속한 월까지 난방비 지급, 노인가구 및 장애인가구 동시 해당 시 장애인 가구에서 지급하고 중복지급에 유의하여야 함 - 노인가구 장기입원자 난방비 지급(1건/xx0천원), 65세 이상 장애인가구에 난방비 중복 지급(2건, x00천원)으로 관련 사업의 대상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재정상 4건 회수 xxx천원]</p>	
10	시민복지팀	<p>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비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금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회계연도 종료시 정산서(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 	
현지 시정			
1	총무팀	<p>통장 회의참석수당 지급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함 	현지주의
2	총무팀	<p>신용카드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및 관용차량 운행일지 미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전산상 미전송으로 되어 있고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 => 현지시정 	현지시정

VII

재정상 조치

구 분	제 목	금 액(원)	비 고
	총 계	xxx,xxx	
회수	9.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부적정(중복지급)	xxx,000	
추징	7. 이륜자동차 지방세 부과 부적정	xxx,x00	

□ 어울락 문화제 개최 [모범사례]

청소년 및 동아리 활동팀 공연기회 제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 및 재능보유자의 공연기회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향유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행사명 : 운정3동 어울락 문화제
- 기 간 : 2018. 9. 1. ~ 11. 3.(매주 토요일/10회) 17:00~19:00
- 장 소 : 야당역 앞 상가 광장
- 참가대상 : 파주시 소재 청소년 및 동아리 팀
- 주최/주관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운정3동 주민자치위원회

○ 실적 및 사업성과

- 매주 토요일 같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거리공연을 펼치며 재능보유자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에 기여
- 매회 50명 내외의 공연자 참여와 주민의 호응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열띤 공연 진행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봉사로 10회의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운정3동 어울락 문화제

□ 은빛바늘 행복나눔 [모범사례]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야생화 수놓기 프로그램 실시, 작품판매 및 기부를 통해 노년층의 행복나눔문화 전파

○ 사업개요

- 사업명 : 은빛바늘 행복나눔
- 기 간 : 2017. 12. ~ 2018. 12.
- 대 상 : 한빛마을 1단지 경로당, 한빛마을 5단지 경로당 어르신
- 주 관 : 운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적 및 사업성과

- 2018. 1. ~ 11. : 월1회 자수교육 및 작품 만들기
- 2018. 11. 7. : '운삼愛 행복나눔대잔치' 개최를 통해 성과보고 및 작품전시, 판매
- 노년기 문화의 다양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수활동을 통한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 기대



은빛바늘 행복나눔

□ **두부사려 똑!똑!똑!** 두부에 사려깊은 정을 담아 똑!똑!똑! 소통 **[특수시책]**

과주장단콩 두부를 매개체로 취약계층 밀집지역(국민임대주택)에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 구축

-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국민임대아파트에 과주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를 아파트 단지 내 자원봉사단이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배달하며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거주주민 참여형 인적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자살사고 등을 예방
 - 관내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임대아파트 단지 실시
 - * 재원 : 경기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신청
 - 정기적 두부배달 방문(월2회, 현 101가구)
 - * 두부 지원 대상자 상호간 두부배달로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지
 - * 단지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 실시간 연계
 - 이웃간 소통의 장을 위한 마이너스 두부장사(월 2회), 공동체밥상(월 1회) 실시
 - 이웃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일잔치(월 1회)

			<p style="text-align: center;">두부마을일기(한시해설)</p> <p>운정 삼동에서 지원해주는 우리마을 똑똑 두부를 나눔으로 화합이 이루어졌네.</p> <p>적막강산같이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 자주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보고 두부도 배달하니 할머니 활기가 생기네.</p> <p>배달하는 자원봉사원들 언니 아우하면서 서로 사랑이니 화합이는 활력이 충만 하구나</p> <p>월말 금, 토요일 우리 마을 두부 축제 날 남녀노소 구름처럼 모여 웃음소리도 높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무술년 긴 여름날 오단지 노인 이</p>
두부사려 똑!똑!똑! 봉사단	마이너스 두부장사	공동체밥상	대상자 감사서한문

□ 운정 출장민원실 조성

운정신도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거리 지역 주민의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야당동 54-1번지(5,569㎡/1,685평)
- 사업량 : 가동 300㎡ 증축, 나동 198㎡ 용도변경, 보도 150m설치 등
- 용도 : 가동 출장민원실
(민원실 41평, 야당보건진료소 19평, 주민회의실 30평)
나동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 사업비 : 513백만원(2회 추경)
- 사업기간 : '18. 10. ~ '19. 04.

○ 향후계획

- '18. 12. : 건축허가 및 시공사 선정
 - '18. 12. ~ '19. 3. : 공사 착수 및 준공
 - '19. 04. : 개청
- ※ '19년 3월 공사 완료 및 시범 운영 후 4월 개청 예정

○ 배치 및 평면도



X

설문 결과

□ 작성자 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인원	21		3	7	2	9	

□ 설문 내용

(단위 : 명)

연번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인원	비고
	수감자 현황			
1	귀하는 성별은?	① 남성	7	
		② 여성	14	
2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0대 이하	4	
		② 30대	8	
		③ 40대	5	
		④ 50대 이상	4	
3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9급 이하	9	
		② 8급	2	
		③ 7급	7	
		④ 6급 이상	3	
	감사담당자등(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 자세			

4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0	
		② 그렇다	10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감사담당자등은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3	
		② 그렇지 않다	6	
		③ 보통이다	2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2	
		② 그렇다	8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9	
		② 그렇지 않다	9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감사담당자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0	
		② 그렇다	8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감사담당자들은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11	
		② 그렇다	7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감사담당자들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2	
		② 그렇지 않다	5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11	감사담당자들은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5	
		② 그렇지 않다	3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감사담당자들은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6	
		② 그렇지 않다	2	
		③ 보통이다	1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감 개요				
13	감사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당하다	18	
		② 짧다(늘려야 한다)	1	
		③ 길다(줄여야 한다)		

14	감사결과 귀하께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확인서 등 제출) 감사담당자등으로부터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① 그렇다	14	
		② 그렇지 않다	1	
		③ 해당 없음	4	
15	기타 의견			